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 - 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15년 9월 16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법제처의 「조례 규제개선 과제 100선」의 규제개선 권고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의 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3조(주차거부금지) 제8호 삭제
 -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
- 제3조의2(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) 삭제
 -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차량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
- 별지 제8호 서식 개정
 - ‘주민등록번호’ 란을 ‘생년월일’ 란으로 변경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: 주차관리과장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(예관동, 중구청), 문의전화: 3396-6262, FAX: 3396-8873, 메일: espga@junggu.seoul.kr)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: 1.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호 중 “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제한 경우”를 “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의2를 삭제한다.

제6조 제2항 중 “주차료”를 “주차표”로 한다.

제21조 제1항 제2호 중 “법 제19조의2에 따라”를 “법 제19조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3조(주차거부금지)</p> <p>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10조의2제1항·법 제17조제2항·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제한 경우</p> <p>3. ~ 7. (생략)</p> <p>8. <u>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「도로교통법시행령」 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</u></p> | <p>제3조(주차거부금지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</p> <p>3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삭 제></p> |
| <p>제3조의 2(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<u>운행제한장치 설치</u>)</p> | <p>제3조의 2 <삭 제></p> |
| <p>제6조(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)</p> <p>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료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</p> | <p>제6조(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)</p> <p>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|

현 행

개 정 안

제21조(용자의 대상)

-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
별회계(「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
별회계 설치 조례」의 주차장관리계
정을 말한다)로부터 용자를 받을 수
있는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노외주차장
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(건물식
또는 기계식)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
장의 수용능력의 2배이상의 규모로
설치한 자
 2. 법 제19조2에 따라 부설주차장을
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자로서 주차
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자

별지 제8호 서식

| 비용납부 의무자 | | |
|----------|----|--------|
| 주소 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|

제21조(용자의 대상)

- ① (현행과 같음)

1. (현행과 같음)

2. **법 제19조제2항에**-----

별지 제8호 서식

| 비용납부 의무자 | | |
|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
| 주소 | 성명 | 생년월일 |